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허재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도모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발표가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이다.

230여 년 전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래 역사 속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산업혁명 직후 유럽에서 각국의 사용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얻고자 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겨우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여성, 연소 노동자들은 참혹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참상이 지속된다면 산업혁명이 가져온 생산방식 변화의 이점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정이 위협받으리라는 우려가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802년 영국의회를 필두로 하여 각국이 공장법(factory law)을 제정한다. 국민경제적 차원의 필요성과는 달리 개별 기업가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생산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 후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한 노동운동 결과로 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한다. 그 과정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 노력과 근로자의 여가활용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기회와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 참가자들은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고 1일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한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자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장시간 노동이 한국인은 근면하다는 평판으로 작용한 적도 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urjj@kli.re.kr).

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목표의식 속에서 장시간 근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람직한 노동관행으로 칭송된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인사이드터들의 장시간 근로는 아웃사이드터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고, 인사이드터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를 노동시간으로 대응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용량 조정의 한 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나 인사이드터들의 근로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을 통해 고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조정할 여지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익년도 임금상승률을 낮춤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 감소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이 당장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부담이라면 익년도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해에 임금감소를 감수하는 대신 익년도의 임금인상을 감수할 수 있다. 이처럼 노사가 가진 수단을 활용한다면 휴일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도의 근로시간 감축은 노사가 충격을 줄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가 윈-윈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적으로 일자리창출 여력이 늘어나면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노동자에게 이득이다.

대기업에서는 익년도 임금인상률 축소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적절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을 동결하고 익년도 임금상승률을 낮추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적응안을 만들면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층 고용을 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협사업 등을 통해 일정액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청년고용할당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민정 합의과정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던 경험을 살려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임금을 삭감한 경우 한 해 정도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노사의 노동시간 단축 협력에 보조할 수 있는 수단들도 존재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운수업 등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12개 특례업종의 비중이 전 사업체의 55%, 총근로자의 38%를 차지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특례업종 축소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커다란 계기가 되고 한국경제의 일자리창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KLI**